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248
----------	-----

제출년월일 : 1997. 9.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기금은 충청북도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함.
-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하되 다음 목적에 사용함.
 -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지원 등
-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2인이내 (위원장 : 행정부지사)
-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 운영
-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토록 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33조, 지방재정법제110조, 장애인복지법제5조 및 제45조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동법제45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 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기금의구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의 기금출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구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재활복지계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단체, 기관대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운용관리) ① 기금은 충청북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②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 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용기금의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제14조 (관련규정의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제 법 령 조 문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 (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